

##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위반사실 공표)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
2. 사업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. 이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,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, 배출자인지 구분하여야 한다.
3. 위반행위(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)
4. 행정처분의 내용, 처분일, 기간 및 과징금·과태료 부과액

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는 1년간 환경부 및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

별표 4 중 제6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	매출액의	매출액의	매출액의
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	2/100	3/100	5/100
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			
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			

## 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